

정책포커스

(PF 2019-XX)

VI.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검토와 문제 사례 분석

VII. 정책적 방향

#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조맹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

이석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 CONTENTS

- I. 신문 및 언론의 질식사 상태.....‘
- II. 문재인 정권 시대의 표현의 자유 수난.....
- III. 가짜 뉴스의 양산과 그에 따른 규제.
- IV. 있으나 마나한 많은 법·규정들.....
- V. 표현의 자유의 법적 검토와 문제사례 분석.....

《 Abstract 》

#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 신문 및 언론의 위기:** 스마트폰으로 모든 소식을 접하는 시대, 10명 중 8일은 모바일로 뉴스를 보고 소수만이 신문을 구독해 읽는다. 종이신문 열독률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7%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1996년 85.2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 표현의 자유 수난 시대.** 언론은 좌 쪽으로 기울려진 운동장이 되었다. 이 경향은 문재인 정권을 관통했다. 개인의 언론 자유는 질식 당하고, 집단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주종을 이루었다.
- 가짜 뉴스의 양산.**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명제로 기술, 즉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를 표출시키면서 한 사회는 가짜 뉴스 왕국이 된다.
- 과학보도의 실현:** 1920년 리프만(Walter Lippmann)은 “커뮤니티 안에서 자유는 거짓말 정보를 걸러낼 때에만 보장이 된다.”라고 했다. 우리사회는 가짜 뉴스 천국으로 변해있다. 정부까지 프레임을 정하고, L 이념에 근거한 부정확한 정보로 선전, 선동,

세뇌한다. 사실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미국은 1833년 「뉴욕 선」은 처음 대중신문이 출현할 때 당파성 신문에서 벗어나 과학보도, 법정에서 증거 중심의 ‘인간이 관심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당파성 신문으로 자리를 잡아온 우리의 전통과 미국 대중신문의 출현과 전혀 다른 보도 형태이다. 그들은 과학보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out there’로 관찰, 실험, 예증을 통해서 그 운용 원리를 찾아내고, 결과와 원인을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검토**와 함께 사례와 관련 법안 전수 분석으로 문제점 및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다.

○ 민주주의의 핵심요체는 ‘표현의 자유’이다. 헌법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 유튜브에서 특정 콘텐츠들에 대해 광고수익 제한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해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대형 포털에서 특정 집단에 의한 실시간검색어 순위 올리기 작업으로 여론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방해 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자인 본사 소재지인 미국 법정에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 위배로 고발될 수 있는 사안이다.

○ 전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와 검색순위 등을 본다. 이미 공공영역이 된 대형 포털에 대해 공적 관리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논란도 표현의 자유와 직결돼 있어 단선적·직접적 대응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9건이나 되나 모두 심의처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만큼 가짜뉴스 논란이 크지만 법안 내용도 단편적·일방조치적이다.

가짜뉴스(모욕, 혐오 표현 포함)의 판별을 누가 할 수 있으며,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가짜뉴스는 과도한 정치의 산물인 측면이 크다.** 국민과 상대 정치진영, 행정부에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여야가 먼저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중립적 대책과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터넷·포털 공공성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 또는 동수 추천의 ‘인터넷·포털 공공성 특별위원회’와 ‘포털 알고리즘 공공검증 위원회’ 구성 발족, 포털의 언론 규정 입법 또는 뉴스 재가공 금지(아웃링크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 정치중립화 등을 시급한 정책으로 제안한다.

##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 1. 신문 및 언론의 질식사 상태.

스마트폰으로 모든 소식을 접하는 시대, 10명 중 8일은 모바일로 뉴스를 보고 소수만이 신문을 구독해 읽는다.<sup>1)</sup> 종이신문 열독률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7%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1996년 85.2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광고에 거의 의존하는 신문은 재정에 위기를 맞게 마련이다. 영세 신문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동 조사에서 76.%가 독자가 포털사이트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누적적 결과물이다. 요미우리신문의 800만부와 아사히 신문 600만부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일본은 2016년 일본신문협회의 조사결과 판매수입은 전체 수입의 57.3%, 광고수입은 21.5%에 불과하다(사설, 2019.07.27.).

일본과 달리, 국내는 독자가 포털에 기사를 검색하지만, 신문사는 그 직접 클릭의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1)윤승훈(2018.12.17)., 「'뉴스 모바일로 본다' 80%..신문 열독률 17% 불과」, 「진과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10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갤럽이 대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천 4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포인트이다. ‘

포털이 구독자를 조절, 조작한다.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곳은 포털이 알아서 검색 순위에서 밀리게 한다. 더욱이 공배제로 신문의 색깔 자체를 희석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에 책임감도 떨어져, 사실을 정확하게 다루는 신문의 숫자가 크게 떨어진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 정도를 제외하고 기자의 사명감도 그만큼 떨어지게 일쑤이다. 대부분 신문은 정파성에 매몰된 나머지, 진실의 세상을 도외시한다.

지난 20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는 주로 신문 망한다는 소리만 반복했다. 독자를 인터넷으로 몰았다면, 이 매체는 '통제혁명'(control revolution)에 노출되어 있다. 신문이 포털에 의존하고, 상업·정부광고로 연명한다면 정권은 언제든지 신문을 옥죄 수 있다.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게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신문은 정권의 충견으로 변한다.

그 몇 개 안되는 비판언론에 문제인 청와대는 엉뚱한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했고, 그의 굳은 표정은 ‘검찰 개혁·조국 수호’ 좌절이 ‘성찰 안 하고 신뢰 못 받는’ 언론 탓이라는 책망의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했다(권호, 2019.10.14).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술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취임사와 그 실천과정이 전혀 다르다.

신문 옥죄는 방법을 보자. 신문법에 의하면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라고 규정하나,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 그 기능수행에 의문을 갖는다.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ABC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일간신문 166개(총 신문사수 전국 871; 전

국지 293, 지역지 573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 가운데 69개만 유가부수 1만부 이상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신문은 10만부 정도는 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신문은 16개뿐이다. 10만부 전후의 지역 신문은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등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알량한 정부 광고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정권은 그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지역신문인 경우 “지역 산업체가 적고, 이들은 생활정보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정부광고 수입과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신문경영을 통해 입은 재정적 손실을 정치권력 획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손한다.”라고 했다(장호순, 2009).

이런 상황에서 언론 기사가 ‘중추 신경의 확장’, 혹은 ‘뇌의 확장’으로 본다면 야성을 상실한 신문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중앙·지역을 돕는 정부 광고의 실태를 보자. 김영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는 총 871개사, 매출액은 2,30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신문 578개사가 수행한 광고료는 총 977억 원으로 약 42.3%에 해당한다.

<표1>

<전국/지방 신문사의 정부광고 매출액>

(단위: 천원)

|          |       | 2016        | 2017        | 2018        |
|----------|-------|-------------|-------------|-------------|
| 전국<br>신문 | 신문사 수 | 301사        | 297사        | 293사        |
|          | 매출액   | 118,142,404 | 131,929,596 | 133,216,190 |
|          | 비율    | 57.9%       | 58.3%       | 57.7%       |
| 지방<br>신문 | 신문사 수 | 536사        | 566사        | 578사        |
|          | 매출액   | 85,954,454  | 94,344,683  | 97,717,628  |
|          | 비율    | 42.1%       | 41.7%       | 42.3%       |
| 합계       | 신문사 수 | 837사        | 863사        | 871사        |
|          | 매출액   | 204,096,858 | 226,274,279 | 230,933,818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표2>

<전국/지방 신문사의 민간정상보조 지원 현황>

(단위: 원)

|          |       | 2016          | 2017          | 2018          |
|----------|-------|---------------|---------------|---------------|
| 전국<br>신문 | 신문사 수 | 42사           | 38사           | 50사           |
|          | 지원액   | 5,523,116,190 | 5,739,779,260 | 5,835,295,410 |
|          | 비율    | 80.6%         | 80.6%         | 86.3%         |
| 지방<br>신문 | 신문사 수 | 43사           | 39사           | 39사           |
|          | 지원액   | 1,330,527,400 | 1,381,544,650 | 922,920,220   |
|          | 비율    | 19.4%         | 19.4%         | 13.7%         |
| 합계       | 신문사 수 | 85사           | 77사           | 89사           |
|          | 매출액   | 6,853,643,590 | 7,121,323,910 | 6,758,215,630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가공)

변옥환(2019.10.18).

지방신문의 경우 미국과 달리, 신문기업 계열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군소 신문사가 스스로 자생한다. 물론 언론사가 정부광고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재정의 열악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약점을 이용해 정권은 자신의 정파성을 챙긴다. 정부광고는 “특정 언론이나 신문에 광고를 배정하거나 광고효율성이 낮지만 정파적인 성향이 비슷한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 등이 문제가 되어왔다(김영욱, 2010.여름).

김 교수는 “정파적이지 않은 정보전달 광고나 설득 광고는 공익적인 판단이 쉽지만, 유사 정파적인 광고나 정파적인 광고의 공익성 판단은 자의적인 기준에 맡겨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 (상 개 논문, 298).

환경감시 기능을 상실한 신문은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포털로 독자를 떠나 보냈다. 방송이라고 다르지 않다. 노영방송이 된 KBS는 10%대 초반 시청률로 추락했다. 난시청 지역 시청자 10%를 제외하면, KBS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MBC 뉴스 시청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연예 오락 프로그램도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지상파 TV '넷플릭스, 아군인가 적군인가'」(신규진, 2019.10.22.)에서 “넷플릭스(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드라마 제작사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미 넷플릭스 제작사들이 방송사보다 선호하는 1순위 기업이 됐다. 시청률 10%를 넘는 드라마가 줄면서, 더 이상 ‘지상파 특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제작사들이 반기는 이유다.”라고 했다.

국내 방송 뉴스 시장은 구글의 유튜브에 빼앗긴 상태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수용 형태가 변하고 있다. 방송법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 II. 문재인 정권 시대의 표현의 자유 수난.

헌법 정신과는 엇박자를 계속 연출한다. 헌법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③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21조의 언론·출판은 개인의 자유이고, 집회·결사는 집단의 자유이다. 양자는 같이 취급할 수 있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갈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대신 언론노조 등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회를 경직화시켰다. 지상파 등 각 방송사와 신문사는 홍위병, 나팔수로 탄생하였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질식된 상태가 되었다.

언론은 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이 경향은 문재인 정권을 관통했다. 프레임 상태의 언론은 공정성 대신 오보,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양산했다. 공정성은 언론에서 실종된 것이다. 더욱이 지상파 방송이 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공정성'은 문재인 정권 때에 방송인이나, 연구자에게 거북한 주제가 되었다.

언론의 기능은 바뀌고 있었다. 언론의 기능은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오락의 기능이 아니라, 선전, 선동, 조직자의 기능을 담당했다. 언론은 '진지전'을 구축하는 전위대 역할을 했다. 지상파 방송은 시청률이 추락하고,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면서, 더 이상 인터넷, 포털,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의 경쟁력을 방송이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지상파 방송은 탄 길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민주노총 산하의 본부로 작동하였다. KBS, MBC, SBS 등 본부노조의 명칭이 붙여졌다.

한편 1988년 11월 26일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규약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은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과 사업에서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다<sup>2)</sup>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언노련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언노련은 충실한 정치적 당파성의 색깔을 갖고 있었다.

정부의 방송에 대한 '공정성'은 현실에서 많이 달랐다.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등 대선공약은 헛구호였다. 조직마다 적폐청산이 정부의 구호가 되었다. '인민위원회' 설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동훈, 2018.9.19.).

그 내용은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KBS 공영노조(성장경 위원장)가 제기한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sup>3)</sup>; 6월 19일 내부 4명과 외부 3명 위원으로 출범)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원 징계를 권고하거나, 조사 불응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KBS는 당장 18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진미위 조사 거부자 17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적폐 청산 기구들 중 법원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KBS가 처음이다.”라고 했다.

정파성에 자유가 질식된 상태이다.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가짜

2) [http://media.nodong.org/com/com-4\\_2013.html](http://media.nodong.org/com/com-4_2013.html)

3) 진미위는 향후 10개월 동안 과거 KBS에서 벌어진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부당인사·부당노동행위·부정징탁 사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노지민(2018. 06.07), 「『정상화』 첫발 때는 KBS, 숨 고르는 MBC」, 『미디어오늘』, 그 후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KBS 기자 등 17명의 직원들이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문에서,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 요구한 것은, 인사 규정상 징계 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KBS는 지난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야당 측 이사회가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든 뒤,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기자와 PD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전 KBS보도국장에게 대해 해임 등 모두 17명에 대한 징격과 감봉, 주의 촉구 등의 조치에 대한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이번 판결로 사측의 조사와 징계가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보복성'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라고 했다(KBS 공영노조성명(2019.10.29)), 『법원이 KBS '진미위'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뉴스의 자율규제 갈등에서 밀려나고 한상혁 민언련 공동대표가 그 자리를 인수하면서, 2019년 9월 20일 ‘방통위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정책을 내놓을 권한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사실상 방통위가 직접 뉴스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라고 했다(안준용, 2019. 09.21).

이어 “그는 2019년 08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선 방통위의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해 ‘헌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했다.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지배 세력의 잣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라고 했다.

방통위원장도 논조가 바뀌는 사이 정부의 언론통제가 심화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자유를 옥죄는 소리를 했다. 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조국씨의 비리 의혹(각종 비리의 백화점처럼 되어버린 조국)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보도를 하는 마당에, 공영방송 KBS는 조국을 보호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서, 2019.09.24).

정권의 나팔수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심했다. 「KBS 노동조합(1노조)에서 실시한 투표 참여자 87% ‘양승동 사장 불신임’」(구분우, 2019.09.25)이라고 했다. “KBS 1노조는 24일 ‘조합원·비조합원(2노조+공영노조)을 합쳐 1,14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불신임’ 998표(87.31%), ‘모르겠다’ 85표(7.44%), ‘신임한다’ 60표(5.25%)로 불신임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KBS는 조국 법무장관의 비리의 진실을 끝까지 숨겼다. 조국 씨는 법무장관 35일 동안 투기, 부당 이득, 거짓말·위증, 탈세,

가치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 수 많은 비리사실이 적발되었다. 조국, 그 부인, 그 딸이 연계 되어있었다. 주요 언론은 조국 민정수석 때 벌써 대부분 조사를 마치고, 기본 범죄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앞서 오보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이다.

「오보로 만들겠다는 협박」이라고 할 만큼 언론자유를 옥죄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0월 30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수통인 한 검찰 간부는 ‘앞으로 수사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보라고 하고 기자들을 내쫓으면 되겠다.’고 냉소했다. 이 규정을 주도한 사람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청와대에 불러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종이에 꼼꼼히 받아 적은 간부들이다.”라고 했다(윤주현, 2019.11.02).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6일 법무부 차관을 불러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조국 일가의 위법 혐의와 파렴치 행위 보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이명진, 2019.11.02).

이어 “문 대통령이 그 동안 검찰이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일부러 망신 주고 압박한 경우가 많았다. 언론도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의 균형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법무부는 ‘보도원칙 훈령’,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훈령에 따르면 “법무부가 새로 만든 규정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이나 피의 사실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또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도 기자와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다. 만약 취재로 오보를 낼 경우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고 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는 강력함으로 하루만에 ‘수사 지장 초래’, ‘추측성 보도’를 삭제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포함시켰다.

그것도 공직자에게는 명예훼손 부분이 느슨한 잣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앞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도원칙 훈령'을 만들도록 한 꼴이 되었다. 청와대가 앞서 언론의 감시기능을 유명무실화하고, 언론 자유를 묵살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오보와 가짜 뉴스를 판별할 잣대가 필요하게 된다. '부패와 반칙'의 말과 진실은 전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기술적 속성은 '적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그 때 서로의 자유에 충돌이 일어난다. 현실정치와 언론의 기술적 속성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 공정화, 독립화를 시킬 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 제 1조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공화주의자의 '사실의 언어, 사물의 언어, 경제언어'는 개인을 자유 시장으로 인도한다. 즉, 공화주의하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모든 사람에 의한 개인의 지배'(the rule of each by all)를 추구함으로써, 집합적 자기 결정을 이념으로 한다. 개인은 사회성을 바탕으로 행복을 극대화하는 이론이다. 이 체제 하에서는 개인간의 소통(communication)을 중시 여김은 당연하다. 물론 부르주아 공론장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여론(public opinion)이 증시된다. 여론은 '공동감각'(ensus communis), '일반의지'(allgemeine Meinung), '만인의 합의'(consensus imnium)등과 함께 한다. 이들은 자유주의가 때때로 탐욕의 자기애(self love)를 과도하게 사랑함으로써 자신에게만 만족(satisfaction with oneself)으로 갈 수 있어, 공동체 유지에 해악이 된다. 이기심, 자만으로 흐를 때는 항상 여론을 통해 제어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공화주의 이론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대중 개인의 자유 선택의 힘에 초점을 맞춘다. 몰개입(non interference)으로서 공화주의는 소극적 자유 개념의 자유를 지닌다. 또한 비지배의 정부는 그 뒤에 '적극적 자유', 즉 자기 주체(self mastery)라는 개념을 지닌다(Pettit, P., 1997), 그렇더라도 '자기 주체'가 공통의 이해와 관련을 맺을 때 공화주의는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 586은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홍위병, 나팔수 언론 시대에 맞을 이유가 없다. 자신의 정파성에 매몰되어 소통을 방해한다.

갈등은 심해지고, 사고의 왜곡, 경제 현실의 왜곡은 창의적 자유를 질식하게 만든다. 물론 그렇다고 원리가 이론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주의(liberalism)를 주요 덕목으로 간주한다면 이 자유주의는 '개인에 의한 개인의 지배'(the rule of each by each)라는 의미를 지닌다. 칼 베커(C. Becker)에 따르면 자유주의를 위한 4가설로 정립이 가능하다.

베커는 "생득적인 빼앗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모든 보지 않은 간에 언론 및 출판 자유의 민주주의적 원리는 ①인간은 권리를 알기 원하며 진리에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②결국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경쟁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③인간은 누구나 의견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각자 타인에도 꼭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그리고 열심히 주장하는 것을 허용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상호 관용 및 다른 의견들의 비교 검토로부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프레드 G. 시버트, 1956/1991).

한편 자유의 4가지 가설이 완성이 되면, 다음 조건은 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가라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에 관한 일반적 사상을 특수한 표현 자유

로 바뀌어서 밑은 4가지 기본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하나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아마 진리를 침묵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 ②어떤 잘못된 의견에도 참된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약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지도도 모른다, ③비록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의견이 참된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중은 진리를 이성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편견으로 보게 된다는 것, ④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의견도 때때로 논쟁을 하지 않게 되면 활력이 없어지고 인간의 행위나 인격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했다(동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짝을 이룬다. 즉, “자유주의 본령은 모든 개인에게 천부인권이 있다는 믿음과 권리 주장이 다양성에 대한 관용에 있다. 재산권과 노동권처럼 상이한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추구한다. 현실 속 자유는 ‘실제적 정의’가 아니기에 다수가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합의로 해결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이다. 여기서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민주가 채워준다.”라고 했다(김성호, 2011.11.14).

한편 공화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나, 인간 노력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은 강력히 부인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더욱이 적극적 자유는 자유의 최고봉이다. 규칙이 있어도,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정하게 된다. 즉, “나는 오로지 내 삶을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계획할 때에만 자유롭다.’ 계획은 규칙을 낳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규칙을 부과한다면, 또는 발명한 사람이 누구든 합리적인 규칙이기만 하면, 사물의 필연성에 부합하는 규칙이 존재할 때, 규칙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억압 받는 것도 아니고 규칙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Berlin, I, 1964/2006).

공화주의 하에서 1948년 헌법이 제정되어 9번의 개정을 했으나,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는 수정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유를 헌법에서 뺄 것을 시도했으나, 야당이 거부함으로써 그 뜻이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민주공화주의, 자유주의 하에서 언론은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기술적 속성은 더욱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을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었다. SNS 등 새로운 미디어는 특정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제4차 산업혁명(internet of things)의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통신 영역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상업성이 활성화되어 간다. ‘지구촌’이 일상의 삶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상의 삶은 고급정보를 언제나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속, 저질의 콘텐츠가 삶의 송두리 채 빼앗아 위협에 직면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자면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의 유연성과 고급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언론인의 전문적 능력을 높이고, 기사의 품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게 된다. 건강한 기자와 불성실한 기사를 분리시켜야 한다. 개인성이 더욱 활성화될수록 책임의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유 질식 상태를 벗어나, 법규나, 여타 규제를 줄이고, 책임은 더욱 엄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G의 세계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cyber community, virtual community)를 만들어 낸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중(demos)를 익명의 사람으로 만들지만,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한번의 투표 행사하고 정치에 손을 뗀 상태와는 전혀 다르다. 인터넷의 적극적 자유가 확산되면서, 참여하는 개인을 말들어낸다.

인터넷 공동체는 수용자 누구나 전문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들은 인터넷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가 그만큼 확장된 형태이다. 한 예를 들면



SNS의 인터넷은 토론의 공간일 뿐 아니라, 상거래의 공간이다.

4차 산업사회는 이들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는 여론이라고 특수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이 정보 기반사회의 사회를 더욱 강화시켰다. 미국은 부통령 후보자 고어(AL Gore)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초고속정보망’(an information superhighway)을 세우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그 초고속 정보망의 디지털 하부구조는 경제, 노동, 교육, 의료 그리고 미디어를 통째로 바뀔 것을 예견했다. 이들 영역이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융합이 되는 현실이었다. 그 원칙이 1994년 3월 설명이 되었고, 고어의 초고속정보망은 유럽에서 「반개만 보고서」(Bangemann Report), 즉 「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EC, 1994)에서 유럽의 미디어 정책에 반영되었다. 고어의 정책이 현대 서비스 경제의 경쟁과 효과를 자극시키게 된 것이다.

이 사회는 탈규제화 사회이다. 시장은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가 최적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최소의 개입으로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철저한 책임만 물으면 된다. 개입의 경우 낙후된 시장질서는 바로 집도록 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탈규제의 힘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변화를 위한 배경을 구성하고,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 원리는 지난 세기 동안 은행, 대중 교통수단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었으나, 국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독점의 탈규제를 가져와 디지털 혁명의 촉매제로 역할을 했다. 더욱이 1996년 미국의 텔리 커뮤니케이션법(The US Telecom Act of 1996)으로 텔레콤의 영역에서 재구조화하게 했다고, 방송분야에서 합병의 혼란을 가져왔다. 1934년 FCC 공정성까지 탈규제화로 유명무실화했다. 더욱이 WTO 텔레커뮤니케이션 협정(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Telecommunications Accord(1998)은 진입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가능케 했다.

디지털 메시지는 정서와 감정을 많은 부분 제외시키고 교환 가능한 것을 택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참여의 폭발 시대이다. 10·3, 10·9 시위대에서 보듯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시위꾼을 모은다. 더 이상 방송, 신문, 포털이 아닌,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네트워크가 주요 미디어가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인을 상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그는 기존 미디어는 가짜정보 [fake news] 라고 냉소적 표현을 한다.

정치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정치 현실에 참여를 원한다. SNS를 통해 언제든 네트워크를 엮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미디어가 이 상태를 수용할 수 있게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 III. 가짜 뉴스의 양산과 그에 따른 규제.

물론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명제로 기술, 즉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를 표출시키면 그 사회는 가짜 뉴스 왕국이 된다.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실례들을 들어 설명하자. KBS는 양승동 사장 체제가 2018년 4월 9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시민자문단을 약속'했다. 언론노조 방송이 실제 그들을 앞세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KBS는 경영도 책임지고, 취제도 책임져야 하는 실험을 해야 했다(우리의 주장, 2018.04.11.).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 사실보단 정치인·재벌과 더 가까워」라는 논리가 전개되었다(김성후, 2018. 10. 31). 이어 “사실과 너무 멀리 떨어졌고 정치인, 재벌과 가깝다.’ 외국 언론인의 눈에 비친 한국 언론의 문제들이다. 안톤 솔츠 독일 공영방송 ARD 기사는 지난 29일 한국 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2018 KPF(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보는 한국의 언론’을 발표했다. 솔츠 기사는 한국 언론인이 재벌 및 정치인과 공모해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했다.”라고 했다(김성후, 2018. 10. 31.). 솔츠 기사의 말도 맞다. 그러나 그는 의견을 앞세운 것은 이야기했으나, 집단주의 언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구성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켰다.

「‘간부가 평사원 2배’ 조선 보도에 대해 MBC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이진우(2018.10. 31). MBC 기사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헌법 정신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MBC 사원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90% 내외로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전임 경영진도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따라서 본사의 현 임원과 보직자들 다수가 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사실이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라고 했다(이진우, 2018.10. 31.).

정확성이 심하니, 당연히 가짜 뉴스가 회자되었다. 이념 성향의 외눈박이 보도가 계속된다. 가짜 뉴스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를 문제 삼지 않고, 이젠 유튜브의 뉴스를 문제 삼았다. 김균미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형식만 빌린 전혀 근거 없는 예기부터 사실과 허위정보가 교묘하게 뒤섞인 것까지 다양하다. 얼핏 봐선 사실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가짜뉴스의 범람은 ‘팩트4)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을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라고 했다(정세훈, 2018 봄, 79쪽).

또한 김 위원은 “영국 옥스퍼드사전은 2016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 truth)을 선정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르는 용어다.”라고 했다(정세훈,

4)CNN 기자 브룩스 잭슨은 정치 광고를 검증하는 ‘에드워치’(AD Watch)와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 체크’(fact check) 코너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팩트체크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펜실베이니아대 애너버그 공공정책 센터의 ‘팩트체크닷 오알지’(Factcheck.ORG)란 개설되어 언론사로부터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이 출범하였고, 2011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팩트체크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정세훈, 2018봄).

2018).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의 의지로 프레이밍(enframing)을 시도한다. 경제분야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대선공약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현실은 전혀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대통령이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등을 방문하고 이례적으로 긴급 경제장관회의도 소집하였다. 그러나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정책방향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다(최종찬, 2019.10.29), 정부가 프레이밍하고, ‘공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성을 27번 언급했다(지난해 10번). 그 공정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서의 공정성이 아니었다. 프레이밍 자체가 가짜 뉴스로 간주된다. 언론은 그 프레이밍을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 세뇌를 했다. 공론장의 공정성은 사라진 것이다.

자기 검증 원리(self righting principle)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은 어불성설이다. 결과를 두고, 원인을 찾아가 보면 가짜 뉴스 양산의 불성실한 성과가 된다. 정책 중심은 “평등에 우선권을 두고 시장 기능보다는 정부 규제,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공기업의 성과평가제도 무산되고 임금피크제도 후퇴하고 있다. 재정 지출 사업이 집중된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는 17만 명 늘어났으나 제조업은 11만 명 줄어 들었다....지출 내용면에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많다.”라고 했다(최종찬, 동면).

더욱이 비교적 언론자유를 누리는 유튜브를 가짜 뉴스 진원지로 프레이밍을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개입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

자, 정부가 그 정파성의 균상들은 입법뿐만 아니라, ‘노란딱지’, ‘통신장애’, ‘광고제약’, ‘접근차단’ 등 별 수단을 쓰면서 SNS에 정치권의 개입을 합당화하려고 한다.

현실과 달리, 필자는 여기에서 헌법 정신에 따른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국내에서 ‘정부·여당은 유튜브<sup>5)</sup>가, 야당은 ‘기존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sup>6)</sup>고 한다. 전자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기존 언론은 그 가짜 뉴스를 선전, 선동, 세뇌한다.

「文 대통령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소득주도성장 더 적극 추진」(정우상, 2019.09.17)으로 “문 대통령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한 것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정부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데 지엽적인 것으로 경제 지표를 말하고 있다. 「[김광일의 입] 문 대통령 자신감, 근거가 됩니까?」(김광일, 2019.09.17.)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청와대 수보 회의라고는 하지만 자기 들끼리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발언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팩트 체크 들어가 본다. 먼저 고용을 보자. 문 대통령은 늘어난 취업자가 4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45만 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9만 명이다.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취업자는 오히려 23

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그 내용을 벗겨 보면 노동 생산성이나 미래 지향성을 거론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이런 노인들이 하는 일은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골목길 담배꽂초 줍기, 농촌 비닐 걷기 같은 일들이다.”라고 했다.

기존의 영역은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등을 통한 공론장의 질서가 기존 미디어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미국은 전술했듯, 1791년 제정된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의회는 종교와 언론(스피치 포함)을 제약하는 법은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두고 논의했다.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영역과 같이 논의하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전혀 별개로 생각하면서, 사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는 증폭되었으나, 책임의식이 결핍해졌다. 언론 윤리가 붕괴된 상태에서 가짜 뉴스는 더욱 활개를 펴고 있었다.

미국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전통을 갖고 있다면, 국내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같은 것을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갖가지 법률로 언론 자유를 옥죄고 있다. 법은 국민들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집단(신분)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버도 언론인으로 간주하는 한 그 법망에서 예외는 될 수 없다. 더욱이 유튜브는 다른 매체와 달리, GPS 등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감이 더해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당연히 가짜를 걸러 내는 장치도 필요하게 된다. ‘가짜뉴스’일수록 그 유통속도가 빠르다<sup>7)</sup> 속도감으로 이것저것 섞여진 기사를 짜깁기해 보낸다. 포스트 트루스(post truth)<sup>8)</sup>,

5)박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상의 사실이 아닌 정보만을 가짜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 할지라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매체를 통해 전달된 것은 가짜정보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6)강효상 의원의 언론중재법 대표 발의안은 가짜뉴스의 주된 유통경로로 알려진 SNS보다는 기존 언론사의 가짜 뉴스 보도가 오히려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7)Vosoughi, Soroushim, Deb Roy, Sinan Aral(2018.03).,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ocial Science 359, 1146-1151; 기현석(2018) ,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아주법학』, 12(3), 253-4

8)‘포스트 트루스(post truth)는 1992년 셰르비아계 미국 극작가인 고(故) 스티브 테쉬호가 『네이션지(誌)』에 쓴 에세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탈(脫)진실로 객관적 사실보다도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옥스퍼드 사전 2016년 올해의 단어에서 밝혔다.

더욱이 그들의 연구는 “가짜뉴스’의 전파속도는 정치뉴스의 경우에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트위터를 통해 확산된 양상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짜 뉴스의 전파속도가 더 빠르고 특히 가짜 연예인 이야기, 정치뉴스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짜 뉴스는 진짜뉴스에 비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깊이, 더 넓게 퍼진다.”라고 한다.

‘가짜뉴스’는 정치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는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공직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상규나 윤리적인 부분도 제약의 근거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5·18 망언’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 언론인협회(IPI)는 한국의 집권여당이 ‘기자의 보도에 문제를 삼는 것’(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했다(김상겸, 2019.4.19).

실제 일반적으로 공공직 종사자에게 명예훼손이 그렇게 잘 보장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의 종말, 프라이버시의 죽음, 프라이버시의 상실 등이 그 전자 미디어의 속도감으로 인해 파생된다. 그럴지라도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가짜뉴스’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루어진다(기현석, 2018, 248). 그러나 동 논문은 “미 연방대법원은 1964년 New York Times vs Sullivan 판결을 통하여 다음의 요건 하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민사배상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원법은 ‘공무원이나 공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다.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이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권리고 간주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언론의 자유는 공적 자유로 간주한다. 이런 형태의 판례는 미국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 선거와 같은 공적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방대법원은 Cox Broadcasting Co v. Cohn 사건에서 ‘주(州)는 공익목적으로 공개되는 공식 법원 기록에 포함하여 보편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9)</sup>

미국은 ‘프라이버시권 부존재 원칙’(No privacy in public rule)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sup>10)</sup> 그 만큼 미국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나, 국내의 법은 신분집단 그리고 체제의 유지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문화가 프라이버시권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종교와 윤리 정신, 공개장 언론이라는 자동조절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 그렇더라도 국내의 규제는 법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옥죄는 형국이 된다. 법 만능사회의 비극이 이런 현실에서 볼 수 있다.

국내의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허위의 사실을 공포하거나 공포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

9) Cox Broadcasting Co. v Cohn, 420 U.S. 1975, para 46; 이형석·김정기(2019), “언론과 인터넷상 사적 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미국연방대법원과 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법학』, 35(1), 172.

10) 항상 프라이버시권이 언론자유와 맞부딪칠 때 균형점을 찾는다. 그 내용은 “온라인상에 비공개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지성이 높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지성이 낮으면 즉 비공개성이 높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강화된다는 이론이다(Woodrow Hartzog and Frederic Stutzman,(2013), "The Case for Online Obscurity", California Law Review Vol. 101, 10; 이형석·김정기,(2019), 178).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된다.“라는 원리를 경시할 수 없다.

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기현석, 2018, 243-244).

그 만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사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만, 결과는 허망하다. 최근 관심 영역은 CCTV, 전자 위치추적 장치 등으로 개인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라질 권리, 보이지 않을 권리, 물러날 권리 등이 더욱 법적 영역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성종탁, 2016).

이들의 규제는 도덕률과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의 역할은 그 역할의 기대와 맞물리고, 개인의 이해와 집단적 강제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관계성으로 인한 강제로 체제의 통합을 위하지 않더라도, 전문직 사회에서 사건과 사고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윤리와 도덕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집단적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치 공학적으로 법의 숫자를 늘리면 방법이 있다. 법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낸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기존 사회의 도덕률과 윤리와 더불어 법의 균형을 취하면서 상황(contexts)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전통 미디어의 취재관행 원론에 충실하면서 유튜브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적 수준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국가기구는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쟁점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상시적인 규제’ 등에 관심을 둔다(기현석, 2018, 237).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넘어,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앞서 SNS에 유통되는 ‘가짜뉴스’<sup>11)</sup>를 규제를 하겠다

11)가짜(fake)라는 용어는 "복제(copy), 위조(forgery), 변조(counterfeit), 그리고 모조(inauthentic)와 함께 자주 사용되어 왔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도 '가짜'를 진짜가 아닌 모방(imitation)과 위조(counterfeit)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정의한다(이완수(2018.11.)).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문제제인 정부-가짜뉴스 근절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미디어연대 1년 정책토론회·활동모음』, 미디어연대). 가짜에 뉴스를 함께 정의하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는 가짜 뉴스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성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 정치 경쟁자나 집단의 새를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표출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보를 가짜뉴스로 보기도 한다(유의선, 2018; 이완수,

는 것이다. 특히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기현석, 2018, 238). 이들 논의는 언론자유 관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집권 민주당은 민간주도의 팩트 체크(fact check)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러한 공익적 목적 달성으로 가장 효율적 규제라고 강변한다.

물론 여기서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sup>12)</sup>(fake news)]는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 ‘소셜 미디어 또는 전통적인 뉴스 기사 등을 통하여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오인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로 정의된다(오일식·지성우·정운갑, 2018, 160; 기현석, 2018, 241).

또한 크라인과 블러(Klein과 Wueller, 2017)은 “가짜뉴스를 ‘뉴스의 형식을 빌려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라고 했고, 윤성욱은 “통상 언론에서 만드는 뉴스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이완수, 2018.11, 189).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활발하다. 김관영 등 26인 국회의원이 2017년 4월에 제출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 44조 제 1항)에서 가짜뉴스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정의한다. 이외 다른 법안에 발의된 개념을 보면,

2018). 가짜뉴스를 집약적으로 요약하면, ①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 ②고의로, ③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④언론보도(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다 등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이인철(2018), „가짜뉴스 대응 입법안과 정부의 대책 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연대 1년 정책토론회·활동모음』, 미디어연대).

12)페이크 뉴스(fake news)는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특종의 주인공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에 따르면, “마케팅의 천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낸 말”이라면서 ‘언론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지어낸 표현이다.’라고 했다(이기문(2019.09.27), 「늘 생각하죠, 권력자가 숨기는 게 뭘까」, 『조선일보』, ‘그는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놈들(권력자)이 뭘 숨기고 있을까’를 생각합니다!...’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지고 투명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했다. ‘미국 언론의 진실’로 불리는 밥 우드워드(76)(미국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2019년.09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로 인한 저널리즘의 위기’세션’에 참석했다(동면).

<표 3>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발의자 정의 법률안 |  |   |  |
|--------------------------------------|--|---|--|
| 구분                                   | 안호영 의원<br>등 17인  | 이은권 의원<br>등 12인   | 송희경 의원<br>등 10인  |
| 일자                                   | 2017. 5. 30.   | 2017. 7. 26.  | 2017. 8. 4.  |
| 의안번호                                 | 의안번호 7095  | 의안번호 8194   | 의안번호 8392  |
| 내용                                   | 가짜뉴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 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가짜뉴스”란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
| 조항                                   | 제2조 제1항14호   | 제44조 제1항2호  | 제2조 제1항14호   |

(출처: 윤성욱, 상계논문, 2018.4.)

특히 김관영 등 26인 법안은 허위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을 빌려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이들 법안은 본인을 포함해 제 3자의 이익을 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법의 법안과 다르다. 이들 법안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의 핵심적 개념들은 ‘언론보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이

익’과 ‘기만성’과 ‘의도성’과 같은 작성목적이나 의도에 주목한다. “라고 했다 (이완수, 2018, 192).

유튜브 등 SNS가 가짜뉴스에 민감한 것은 ‘오늘날 핵심 매체로 부상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뉴스 또는 허위정보로 설명한다.“라고 한다(윤성욱, 2018; 이완수, 2018) 이완수 교수는 “가짜뉴스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인 결정적이었다. ‘허위정보는 대부분 소셜 미디어, 팟캐스팅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다(유의선, 2018, Jr Tandoc, et al., 2018; 이완수, 2018, 197). 더욱이 이렇게 규정할 이유로 SNS의 1인 미디어는 취재 체제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짜뉴스는 새로운 뉴스소비 문화일 수도 있다(윤성욱, 2018, 72; R. Caveat Frank, 2015, 315~332.). 그런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일종의 ‘디지털 민속문화’(folklore)<sup>13)</sup>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는 장난(hoaxes), 농담(pranks), 풍자(satires), 패러디(parodies) 등이 활용되는데 사실처럼 보이는 말과 이미지로 포장한다.

더욱이 오늘날 24시간 뉴스 사이클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광범위한 정치 문제를 잘못된 프레임으로 다룰 경우 서민들에게는 결국 압축적이고 빈약한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다(윤성욱, 2018, 73).

가짜 뉴스에 대한 심리적 분석도 빼놓을 수 없다(윤성욱, 2018, 52). 원하는 정보만 찾아서 본다거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일관성이론, 확증편향 등이 대표적인 이론이다. 또한 사람들의 분노가 가짜뉴스를 부채질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리적 요인을 분석 틀로 사용하면 SNS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적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일방적 주장이라면 그것이 비록 기

13) 디지털 민속문화에서 가짜뉴스의 보호범위를 ①정치적 현물, ②상업적 표현물, ③의견과 논평, ④유머나 풍자 등으로 나눠 분석, 보호할 수 있다(윤성욱, 2018, 74 참조).

존 언론사가 보도했다더라도 가짜뉴스로 보는 것이 옳다(이완수, 2018, 194). 그렇다면 가짜 뉴스는 몰라서 잘 못 보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고, 사실을 비틀어 의견을 개입시키고, 그 사실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품격 높은 저널리즘은 사실성에 관심을 가지지만,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입시켜야 한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개념이 간단하지 않다. 여전히 가짜뉴스의 개념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뉴스는 진실을 전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전하면 뉴스로 취급받을 수 없다. ‘가짜’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①상업적 또는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 ②수용자가 진짜뉴스로 오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구성한 경우, ③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본질의 기능과 동떨어진 행위로 좁혀서 설명한다.”라고 했다(황용석, 2017; 이완수, 2018, 195).

저널리즘 차원에서는 현장 취재로 진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초기 방송의 경쟁자 개념과는 달리, WWW가 생겨나면서 갑자기 대안적 미디어가 성장했다(Barrie Gunter, 2003). 그것도 폭발적으로 인터넷 망안으로 들어왔다.

최근 인터넷 문화는 수십 개의 기존의 뉴스 사이트와 몇백 개의 신문을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 같은 동영상과 서로 경쟁을 한다. 어디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는지가 구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하나의 미디어를 놓고 논하기보다, 미디어 생태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가짜뉴스를 밝혀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복잡할수록 원론적 수준에서 그 원인을 치유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저널리즘이 등장하면서 기존 저널리즘에도 변화

가 일어났다. 탐사보도의 유행 이후 PD 저널리즘에 이어 블로그 저널리즘으로 이어지는 저널리즘이 변하는 심층성과 다양성이라는 내용의 확장 외에 관계지향적인 자기표현으로써 미디어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부각된다(이인철, 2018, 210),

이인철 변호사는 가짜 뉴스가 늘어나는 것은 관계 지향적 자기표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말로 정치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견해를 SNS에 표현하면서 편향성이 심하게 대두된다. 콘텐츠에는 사실(facts) 중시가 확실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작동한다.

또한 PD는 편향성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기자는 사건, 사고를 현장에 있는 그대로 기술, 서술하려고 하지만 PD는 프로그램 제작시 결론을 먼저 내고 사실을 짜 맞춘다. 기자와 PD 간에는 사실을 다름에 있어 미묘한 차이이다. 기자는 사실에 충실하고, PD는 기획, 제작의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리얼리티TV 즉, 모든 요소를 함께 엮어 종합화를 시도하는 reality TV를 시도한다.

정치색이 사실적 기술에 편향성을 조장하면서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냈다. 왜곡을 줄여가는 방법은 공개(openness)를 시도한다. 공개함으로써 사회 현실의 해석에서 기득권 엘리트들이롭게 하는 기술을 최소화한다.

#### IV. 있으나 마나한 많은 법·규정들.

법 집행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서 ①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직후 때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KBS 보도국장(현 KBS 인재 개발부 소속)에게 전화를 걸어 KBS 보도에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것 맞느냐'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다급했고 거칠었으며 고압적이었다.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참일 때였다."라고 했다. 한편 김도연(2018.12.14). 동 기사는 "이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오보를 정정하기 위한 행위, 홍보수석으로서 업무 행위 등의 논리를 펼쳤으나 오연수 판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오 판사는 이정현 전 수석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野 '유시민 한마디에 양승동 사장 나선 건 KBS 편성 규약 위반」 이라고 했다(원선우·이슬비(2019.10.14).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KBS의 '조국 취재팀'을 문제 삼자 KBS 경영진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기자들을 배제한 '특별취재팀'을 신설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편성 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KBS 편성 규약 제7조는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다."라고 했다.

방송법도 어기고, '방송 편성 규약'도 이긴 것이다. 이젠 유씨는 검찰 조사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사는 「유시민의 오만..하다하다 이젠 '조국수사 끝낼 시점」 이라고 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제9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그들의 집회가 정당인지 따져보자. 2달 동안 130만 관련 기사가 회자되어도, KBS 등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에 어떤 주도적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야 KBS는 자신의 취재과일을 내놓았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흥위

병, 나팔수 역할만 하도록 한다. 국민의 방송에 국민은 그들이 말하는 국민일 뿐이다. 실제 국민은 '적극적 자유'를 전혀 누릴 수 없었다.

기존법 뿐만 아니라, 대기한 법도 만만치 않다. 윤성욱 교수가 밝힌 20대 국회에서 2016년 이후 「가짜뉴스법안」은 12건, 정보통신망법 개정 8건, 언론중재법 개정 1건, 공직선거법 개정 1건 등 제정 및 개정을 대기하고 있다(윤성욱, 2019).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서 그 규제를 담당하곤 했다. 언론 자유를 정부기구에서 담당케 한 것이다. 법은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 즉 생선이 아닌가? 더욱이 그 법과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면 언론자유는 고사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제 그 법의 실천되는 과정을 보면 숨방망이로 변해 있다. 있거나 마나한 법 조항일 뿐 아니라, 언론통제의 도구로 작동시킨다.

언론자유는 규제에 질식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 전문은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노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V. 표현의 자유의 법적검토와 문제사례 분석

### 1. 헌법 등 법률상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의 조건

○ 선거와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국가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에서 그 핵심요체이자 생명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21조 2항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했다. 즉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사전에 제한할 수 없다.

○ 미국의 경우는 더 나아가 연방헌법 수정 1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률이 불명확하게 막연한 경우, 표현이 현실적으로 악의가 분명하게 있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인격권과의 충돌에서 통상의 경우 우위를 누린다. (김상겸 교수, 2019.04.19.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 기조발제문)

○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 판시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문제’에 대해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

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그러나 인터넷이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소통 수단으로 발전한 상황에서는 법치국가 질서에 따른 규제는 필연적이다.

이와 관련,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양자와의 법익을 교량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위협에 빠지도록 스스로 자초하였는지 여부, 즉 SNS에서 스스로 자신의 사적 생활영역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노출시켰는지 여부도 비례관계를 따져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 2. 집단적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사전검열/여론조작인가

### 1) 문제 사례들

[사례 1]

(조선일보

2019.11.11.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5847>)

**"유튜브版 블랙리스트... 구글 제소할 것"**

친문들이 조직적으로 신고 세례...

새벽에 방송 올린지 1시간도 안돼 특정 유튜버 광고 수익 차단 조치 개별 동영상 대상 광고 중단하는 '노란 딱지'보다 무거운 제재, 일개 직원 선에서 판단했겠나

[사례 2]

(한국경제신문 2019.11.08.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38404>)

**유튜버 단체 "노란딱지 검열 중단하라"**

'신의한수' 등 보수 유튜버

"언론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규정 위반 등 기준 공개 요구

[사례 3]

(노컷뉴스 2019.10.25.보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574>)

**'실검'개선 놓고 전문가 의견 팽팽..."의사표현"vs"여론 조작"**

KISO 포럼...상업적 이용·개선 필요성 및 방안·알고리즘 공개 등 두 고도 갑론을박

**2) 사례분석 및 문제점**

○ 우선 '사례 2' 경우부터 보면, 유튜브의 광고 수익 제한 조치인

'노란 딱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논란이다. 특정 성향의 정치·시사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유튜브가 언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사례 1'은 아예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내린 경우다. '노란 딱지'보다 더 무거운 제재로 사실상 '유튜브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직접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라며 "일개 직원 판단으로 이랬겠는가. 간부급 이상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이상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영상은 모두 게재될 수 있다"며 "일각의 주장과 달리 채널에 관계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콘텐츠에 노란딱지를 붙일 때 사유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사례 2' 보도 기사는 전하고 있다.

○ (사례 1,2 법적 검토) 이들 유튜브 문제는 법적 검토에서 전술한 대로 사실상의 '사전검열' 행위 소지가 있어 전수 조사를 통해 유튜브 조치의 객관성, 형평성, 합당성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유튜브) 사업활동 부당 방해 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자유한국당 고발 방침 발표). 나아가 유튜브 사업자인 '구글' 본사 소재지인 미국 법정에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 위배로 고발할 수도 있다.

○ '사례 3'은 특정 세력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특정 검색어'를 올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1위에 올려 놓은 경우다. 이

경우는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계속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여론 조작’이냐의 논란이다.

○(사례 3 법적 검토) 전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와 검색순위 등을 본다는 점에서 이미 공공영역이 된 곳에서 특정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공공장소에서 현수막을 걸 때도 절차와 기준이 있고, 선거법에서 선거기간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하고 있듯이 포털에서의 ‘여론 조작’ 문제에 대해 공적 관리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 VI.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법적 검토와 문제 사례 분석

### 1. 가짜뉴스 관련 법안 및 대책 현황

#### 1) 법안 전체 현황

○ 문재인 정부 출범후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29건이나 되나 모두 심의처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난무하기도 했지만 법안 내용도 단편적·일방조치적으로 흘렸음을 반증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건으로 인터넷과 포털상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5건, 형법 개정안 3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1건,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안 제정안과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 제정안

이 각 1건이다.

○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019년 10월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고, 관련법안 2개 즉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유포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 신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2) 법안 전수 개요 ①

- 2018.11.29. 박광온의원 등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후분 총 17건.

- 연월일, 의안번호, 발의 의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

○ 2018-12-28 [2017852] 김세연의원 등:

포털에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 등.

○ 2019-01-11 [2018139] 유의동의의원 등:

검색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부당 이익이나 타인 피해 목적의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 2019-02-15 [2018650] 천정배의원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 (아래 bo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①항 명시 9가지 불법정보)로 규정. 유통 방지

○ 2019-02-28 [2018899] 김병기의원 등: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

○ 2019-05-01 [2020099] 박완수 의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

○ 2019-05-13 [2020399] 유의동 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 제공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화”

○ 2019-05-29 [2020682] 하태경 의원 등: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이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범죄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 해당 정보통신망서비스 이 용해지, 접속차단 및 처벌”

○ 2019-10-25 [2023011] 박선숙 의원 등: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 2019-10-28 [2023071] 김재원 의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2019-10-29 [2023198] 박대출 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 2018-11-29 [2016914] 박광온의원 등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가 원인 보도와 같은 효과 발생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 (안 제15조제6항·제9항 및 제34조제1항).”

○ 2019-05-21 [2020521] 신동근의원 등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 청구 관련 분쟁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안 제18조).”

○ 2019-10-18 [2022913] 한선교의원 등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현행 3개월)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현행 6개월)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안 제14조제1항).”

○ 2019-10-31 [2023502] 김영주의원 등  
법률상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임.(안 제7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 2019-06-26 [2021146] 김병기의원 등  
사자(5.18희생자 등)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안 제311조의2 신설 및 제312조제1항).”

○ 2019-10-28 [2023072] 김재원의원 등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311조)

- 2018-11-29 [2016907] 박광온의원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유통 또는 사용시나 일제 찬양시 처벌 근거규정 마련.(안 제118조의2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①항  
 (9가지 불법정보)**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  
 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  
 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  
 보

**3) 법안 전수 개요 ②**

- 20대 국회이후 2018년 11월 29일 박광온 의원 등 발의 언  
 론중재법 일부 개정안 직전까지 12건 (제정안 2건 포함).  
 (「윤성옥 (2019).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  
 과법, 18(1), 103-138」 인용 재정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8건)

- 2017-04-11 [2006708] 김관영 의원 등  
 가짜뉴스를 이용자의 권리보호 범위에 포함, 거짓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017-04-25 [2006804] 주호영 의원 등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도 유통이  
 금지. 가짜뉴스가 불법정보로 심의중인 경우에는 방통위가  
 표시의무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신설조항 마련.
- 2017-05-30 [2007095] 안호영 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삭제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017-07-26 [2008194] 이은권 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삭제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017-08-04 [2008392] 송희경 의원 등  
 누구든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17-09-01 [2008920] 이장우 의원 등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18-07-30 [2014625] 김성태 의원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가짜뉴스를 포함. 특정 피해자가 없더라도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짐. 이용자가 가짜뉴스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가능해 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

○ 2018-10-05 [2015891] 박완수 의원 등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1건)

○ 2017-04-25 [2006805] 주호영 의원 등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 요청권 부여.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1건)

○ 2017-04-25 [2006807] 주호영 의원 등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를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짜뉴스 피해자는 선관위에 가짜뉴스 표시 요청권 부여. 각급 선관위는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따라야 하나 이의신청 가능. 가짜뉴스 표시 의무 위반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안 제정 1건)

○ 2018-04-05 [2012927] 박광온 의원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법안 제5조, 제6조).

- 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교육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방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면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제7조).

-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생산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제8조).

-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정보의 확산에 기여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 이용자는 가짜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0조).

-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정보 확산에 기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조).

- 가짜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6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 제정 1건)

○ 2018-05-09 [2013495] 강효상 의원 등

- 국가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조).

-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둔다(안 제5조).

-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한다(안 제6조).

- 주관기관은 분야별 가짜유통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안 제7조).

-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가짜뉴스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

- 또한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은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

**4)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제시 의견 (2018.12.06. 이슈 브리프)**

○ 정부의 직접 개입 보다는 IT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IT 기업과 유관 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IT기업과 매크로 조작의 공생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IT기업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5)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2019.10.01.)**

○ 허위조작정보 개념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명시된 9가지 ‘불법정보’를 기준.

-‘임시차단’ 조치도 이에 근거해 실시.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

-타인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정보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로 한정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에서 배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 포함

○ 대책  
-해외 플랫폼 사업자(유튜브 등)에 대한 책임 강화  
△구글코리아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정보통신망법에 ‘역외 규정’ 신설) △플랫폼 사용자(유튜브 등)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및 임시차단 요청 처리 담당자 채용 △인공지능(AI), 매크로 사용 불법정보 유통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허위조작정보 처리과정 담은 투명성보고서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출(방통위가 공개) △방통심의위 온라인 분쟁조정 결과

에 따른 명령,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무거운 배상책임.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첫 면에

우선 정정보도 문제는 특위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신문은 첫 지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정기간행물은 본론 시작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함.

-‘팩트체크’ 활성화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민간 자율 팩트체크 기관·단체·법인의 딥페이크(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 대응 및 관련 연구용역 사업 진행 등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 신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제도 도입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 의무적 운영.

-공무원의 혐오·차별 표현 금지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역사 부정·왜곡 입법화 추진

일제강점기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자나 영역이나 벌금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 추진 및 이른바 ‘5·18역사왜곡금지법’으로 불리는 역사왜곡처벌법 통과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도입.

○발의 예정 법안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유포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 6) 방통위 입장

○ 2019년 11월 7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회견

- 종합대책을 마련할 성격의 사안이 아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실화, 사업자 자율규제 등의 대책 마련.

## 2. 가짜뉴스 법안·대책의 문제점

### ㉠ 국회 발의(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

(유포자 엄단 및 사업자 즉각 시정 조치)

○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모욕·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 9가지 불법정보에 포함



- 가짜뉴스 삭제 및 유통 금지,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포털)의 검색결과 조작 금지
- 명예훼손, 역사 부정·왜곡 처벌 강화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 정보통신사업자(포털)의 자체 관리의무 강화
- 해외사업자(유튜브 등)에 대한 국내법 적용, 책임 강화
-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간섭 금지 대신 공적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언론사 책임 강화)
- 실효성있는 정정·반론 보도  
(정부 관리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뉴스 심의 및 유통금지 기능 강화 및 관련 인원 증원
-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자에게도 부과)
- 대 국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② 법안의 문제점·한계 및 재검토 방향

○ 근본적으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임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냐이다. 판단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런 점에서 엄단 위주나 임시 선제조치의 발의법안들은 사실성, 객관성, 표현의 자유 훼손, 정파성 등의 논란만 지속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 허위여부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 구체적 해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나 실효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88(병합) 결정)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불명확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 역사에 대한 허위왜곡 표현도 의문 제기나 사실성 사안의 대두, 학술적 논의 등을 차단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고, 모욕 여부도 사실성과 가치 판단, 그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원 판단까지 가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비례 원칙에 의해 필요성이 있으나,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법적 책임 부과 등의 강압은 부작용과 부메랑을 낳을 뿐이다. 유튜브의 ‘사적 검열’ 부작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을 비교해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칙 (Good Samaritan Law)’을 적용하여 명백한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규제를 거의하지 않고 있다.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7권 제2호, 2018, 39-68)

○ 그러나 특정세력의 실시간검색어 및 댓글 조작은 명백한 불법

성이다. 표현의 자유라기 보다는 국민여론 왜곡의 문제이므로 시정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포털의 뉴스편집 재가공도 중요한 언론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와 대책이 필요하다.

○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은 이미 공공 광장이 됐다. 오프라인의 일반 광장과 거의 다르지 않다.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의 정부의 관리 대책 마련은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서의 전제는 정파성을 띤 대책이나 표현의 자유 훼손, 기업의 순수 자율성 측면 간섭이나 규제는 안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기관이나 미디어교육 담당 기관 경우도 정치적 중립 확보가 선결요건이다.

○ 가짜뉴스 논란은 과도한 정치의 산물인 측면이 크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조국 전법무장관 관련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정치적 표현물에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유튜브 활성화로 반대 입장이 되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돌아섰다. 국민과 상대 정치진영, 행정부에만 책임을 넘길 게 아니라 여야가 먼저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 중립적인 대책과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 VII. 정책적 방향.

1. 언론보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출입처에서 ‘카더라’ 언론은 줄인다. 출입처는 뉴스거리를 인터넷

넷에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숨김없이 공개한다. 출입처에서 기자가 꽤거리 보도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공무원은 가능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기자에게 정책을 설명하도록 한다. 현장의 분석 기사를 쓰되, 콘텍스트를 가능하면 많이 삽입시킨다. 현장의 합리성, 이성이 살아있는 기사를 쓴다. 과거 역삼각형은 초기 전신이 발전될 때, 사용했다. 사실 위주 과학 중심주의에서 발전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어 그렇게 글을 쓸 필요가 없다. 기술이 바뀌면 그 틀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적, 과학정신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황은 최고도로 반영 되는 세상이다. 그 내용은 ①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으로 자신의 준거점(a point of reference)과 타자의 것이 하나의 단위로 이룬다, ②육체적 상황(physical situation)은 자신이 경험적 실체로 존재한다, 관계성이나, 자신의 반응에 관한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의미와 그 상황이 포함된다. ③문화적 상황(cultural situation)은 문화적 전통, 아이디어, 혹은 믿음, 표출적 상징, 가치 패턴 등 상징적 요소이다. 문화적 상황은 전통과 윤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글을 쓰도록 한다. 뒤르켐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을 강화토록 했다.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강제성·보편성·전달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개인의 윤리와 도덕 뿐 아니라 사회의 윤리 영역에 속한다.

2.. 과학적 정신(the scientific spirit)에 따른 글쓰기를 권장한다.

the New York Sun(1833) 등 처음 대중신문이 등장했을 때, 당시 의사는 삶과 죽음에 사투를 벌리는 환자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구술했다. 당시 의사들은 종교인들을 신뢰를 했을 이유가 없었다. 언론인들은 종교인들보다 의사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다. 현재 SNS 등 주요 미디어는 기술의 바탕으로 가능하고, 인공지능

(AI)가 눈앞에 있다. 그들은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다. 주도 미디어는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유튜브 그리고 포털 등이 주로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시킨다.

유튜브는 열린 채널이다. 구글은 세계적 기업이다. 그 안은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구가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유연한 체제를 유지한다. 세계 27억 인구가 그 안에서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독점적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유연화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초연결 사회는 공간은 가상공간을 사용하고, 중추신경의 뇌와 뇌가 부딪치면서 빅뱅을 형성한다. 사물(things), 사실(facts)이 그 안을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강철 팩트(a strong iron facts)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유통속도가 빨라진다.

WWW 안에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가 집결한다. 기사도 많은 부분 인공지능(AI)이 담당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인공지능, 즉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정해진 기사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SNS 통해서 직접 표출한다. 알고리즘의 정보는 2진법의 용어로 수리화한 것이다. 수리의 관계성 속에서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형성된다. 지금과 같은 지상파 방송으로는 신분집단, 즉 권력 유지 밖에 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지상파 방송으로는 신분집단, 즉 권력 유지 밖에 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방만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집만 증가시킨다. 그러나 질적인 집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보도 영역은 '지구촌'까지 확장이 된다.

지금까지 상황을 도외시한 '카더라' 언론은 오보가 과다하게 난다. 상황적 요소가 약하게 반영되었다. 과다한 선전, 선동으로 가짜뉴스 왕국이 되었다. 국가의 미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윈주의 사회는 서로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자신과의 대화(self talk)를 강화시키고, 과학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윈주의 사회에서 과학적 정신으로 과거의 관계성을 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라면, 과학은 시공간의 콘텍스트 안에서 기술의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그렇다면 기술은 원래 techne(Technikon, 지혜, 이성, 정신, a fine arts)+logica(논리)이다. 그렇다면 기술은 인간 정신, 즉, 프로네시스 [사려, 思慮], 에피스테메 [認識] 소피아 [知慧], 누스 [理性] 등이다. 또한 기술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이고, 원천기술의 보고이다. 기술을 기능, 즉 정치공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적용할 때 인공지능 시대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내는 정치적 이유로 언론자유를 제약시킨다. 그러나 미국 소유의 유튜브는 저작권만으로 규제를 시도하다.

기술의 도움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가장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개념(self concept)가 없으면, 기술에 매몰된다. 중추신경, 뇌신경이 연결되는 사회에서 자기 개념이 없이는 기술 문화에 매몰되고 만다. 4차 산업혁명, 즉 사물인터넷 시대는 2진법의 수학이 작동하는 시대이다. 수학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다. 단순화시키면 로버트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준다. 커뮤니케이션은 잘 하는데 내용이 없게 된다. 인공지능(AI)은 의견을 묻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입력하도록 바란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조작적 정보를 주면 가짜 뉴스 세상이 된다. 그 수위가 높아지면 공동체와 국가는 붕괴된다. 구글 인공지능은 분석 기능이 있어 정확한 정보만 준다면 바둑 왕 커제도 100전 100패를 한다. 무인 자동차는 사고 없이 굴러간다.

정치인과 그 패거리 부역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인데, 계속 큰 소리를 하고 있으니...4차 산업혁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 것은 헛꿈에 불가하다..

물론 과학이 진실을 위한 열정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과학, 즉 응용과학이 판을 친다. 마케팅 기관은 정확한 관점과 통제 아래 소비자를 잡아 놓기 위해 여전히 더 많은 응용과학을 사용하며 이에 화답한다. 대중화된 과학은 다

수의 불쾌한 진실을 피하도록 사람을 독려하는데, 단지 그것은 전자뇌가 인간적 장면으로부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제거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사회일수록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보면 모형 만들기(modeling, framing), 소통(communication), 제어(control)하는 선순환 구도를 더욱 창조적 진화로 이끌 필요가 있다.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사실적 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제어는 창조적 진화론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장의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인과관계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적극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유튜브 운동은 국내 언론보다 앞선다. 유튜브에서 VOA는 한반도와 정세를 세계적 시각에서 전해준다. 또한 그 주요 내용은 수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한다. 구글이 성공한 이유는 삶과 언론을 같은 땅 안에 집어넣었다.

규제는 저작권, 즉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구글은 요리하는 것을 동영상 뉴스로 취급했고, 개 키우는 것을 뉴스로 취급했다. 정치화에 익숙한 국내 언론은 그 과정에서 유튜브로 수용자를 거의 빼앗긴 상태이다. 정치뉴스는 '카더라' 언론이다. 반면 사물인터넷의 뉴스 교환 방식과 전혀 다르다. 그 틀에 들어가려면 언론은 기존 프레임 된 것을 해체시킨다.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의 덕목이고 정파성 의견을 물건(things)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국내 사회는 기술의 맹목적 사용에 대부분 의존한다. 여론조사 공학에 의존하면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로 실제로 기술 공학에 매달리게 되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고, 책임이 있는 역사적 운영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이런 기술 공학, 즉 '권력에의 의지의 상황에서 사실주의 탈을 쓴 뉴스가 양산된다. 너무나 기능적 기술에 의존하다보니, 실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되고, 공동체가 붕괴된다. 트위터로 가능

했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실패한 예가 즐비하다. 기술은 계속 표준을 바꿔가며 변화한다.

사회 전 영역에서 공개화를 확장시키고, 허위화를 찾아줘야 한다. 권력으로 화석화된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물리학자 포퍼(Karl Popper)는 '허위화 가능성(falsifiability)을 찾아내도록 권장했다. 진실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자기 검증 원리'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언론은 그 과정에서 허위화를 풀어, 사회체제 개혁에 접목시켜야 한다. 그 때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사실(fact, things)은 원래 'out there'에서 얻는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객관화, 과학화로 통제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과학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앞에 전개된다. 한쪽이 '가짜 사실'로 입력이 되면, 그 체제가 비정상적인 왜곡된 현실로 작동한다. 사회의 전영역이 인터넷, 모바일로 서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걸 바꾸기 위해 정치 권력자는 탐욕의 정치권력을 사용하게 된다. 권력은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한다. 어느 새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 전체주의 사회는 성역(聖域)이 존재한다. 성실한 기사는 성역을 붕괴시키고, 해체시킴으로써 특종을 건지지만, 대부분 기사는 정권의 홍위병, 나팔수로 변해있다.

### 3. 가짜 뉴스 양산의 양태

지나친 이념 중심 보도에서 과학보도로 대치한다. 공영, 민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도의 문화를 바꿔줘야 한다. 지금처럼 '카더라'언론, 출입처 중심의 언론은 전술했듯 많은 오보를 양산한다. 물론 저널리즘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①상업적, 정치적 의도로 가진 조작행위, ②수용자가 진짜뉴스로 오인할 수 있는 형식의 정보, ③사실검증의 측면에서 저널리즘 본질과 동떨어진 행위 등으로 좁혀서 설명이 가능하다.

국내의 보도형태는 그 안에서 기자는 주관적 가치에 매몰되어 헤어나지를 못한다. ‘카더라’ 언론으로 선전, 선동, 조직자의 기능을 한다. 홍위병, 나팔수 언론을 일삼는다. 심지어 코미디언이 방송에 출연해 이념 편향적, 확증편향적 정치 담론을 펴고 있다. 더욱이 정부까지 합세해서, 이념 위주 지상파 방송을 이끌어 가고 있다. 언론문화가 정립되지 않으니, 그 피해는 엄청난 상황이다. 사실이 왜곡되기 일쑤이고, 개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자유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사회체제는 얼마가지 않아, 선동꾼에 의해서 파괴되고 만다.

또한 PD식 기법이 심하게 작동한다. PD는 처음부터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2007년 광우병 사건에서 잘 보았다. 기자와 달리 PD는 집단적 작업을 한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만연된 상황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자와 PD는 자세히 분석하면, 기자는 사건, 사고를 현장에 있는 그대로 기술, 서술하려고 하지만 PD는 프로그램 제작 시 결론을 먼저 내고 사실을 짜 맞춘다. 기자와 PD 간에는 사실을 다름에 있어 미묘한 차이이다. 기자는 사실에 충실하고, PD는 기획, 제작의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리얼리티TV 즉, 모든 요소를 함께 엮어 종합화를 시도하는 reality TV를 시도한다.

정치색이 사실적 기술에 편향성을 조장하면서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냈다. 왜곡을 줄여가는 방법은 공개(openness)를 시도한다. 공개함으로써 사회 현실의 해석에서 기득권 엘리트들이롭게 하는 기술을 최소화한다. 시장에서 자기 검증 원리(self righting principle)이 작동토론 한다. 보통사람의 시대, ‘적극적 자유’의 시대는 기득권 옹호에만 관심을 둘 수 없다.

#### 4. 개인의 소통 단위에서 글쓰기 강조.

글 쓰기는 과학 정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쓰고, 수용자도 그런 관행에 익숙하게 한다. 서로간의 공통의 지적 방법(a common intellectual method)가 구성되게 한다. 이는 개인 소통 단위를 근거로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시민주의 정신이다. 지금 까지지 패거리 출입처 중심의 보도는 정파성의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정확성,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 균형성 등 좋은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의 좋은 저널리즘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으로 가치를 형성시키도록 노력하지만, 가치, 태도, 믿음 등을 통한 개인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방법론은 오히려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자기와의 대화(self talk)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우병과동(2008.6), ‘최순실 테블릿PC’(2016.10). 세월호 7시간(2016~7), 박근혜 탄핵(2017.3.10), 조극 엄호사태(2019.09) 등 사태를 볼 때 시대 때도 없이 이념을 개입시키고, 사실은 왜곡되고, 패거리를 일삼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문제는 신문은 개인 기업이니, 그렇다고 하지만 지상파, 공영방송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 소통의 개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자기검증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

#### 5. 과학보도의 구체적 방법

‘강철 팩트’(a strong iron facts)를 놓치기 일쑤이다. 1920년 리프만(Walter Lippmann)은 ‘커뮤니티 안에서 자유는 거짓말 정보를 걸러낼 때에만 보장이 된다.’라고 했다. 우리사회는 가짜 뉴스 천국이 된 것이다. 정부까지 이념에 근거한 부정확한 정보를 선전, 선동, 세뇌하도록 했다. 어디도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체가 붕괴될 직전에 놓여있다.

이는 SNS 시대, 즉 알고리즘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이다. 사실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미국은 1833년

「뉴욕 선」은 처음 대중신문이 출현할 때 당파성 신문에서 벗어나 과학보도, 법정에서 증거 중심의 ‘인간이 관심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당파성 신문으로 자리를 잡아온 우리의 전통과 전혀 다르다. 그들은 과학보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초기의 정파성 신문과는 다른 측면이 부각되었다.

진실은 ‘out there’로 관찰과 실험, 비교, 예증 등을 통해서 그 운용 원리를 찾아내고, 결과에 원인을 규명하게 이르렀다. 과학이 좋은 점을 정리하면 ①과학은 확실성이 보장된 인식, ②과학은 자연의 대상화 속에서 시도된 측정가능성으로 정밀성의 대명사. ③과학은 인과적으로 해명된 계산, ④과학은 대상 영역을 세분화해서 분과 과학이 정립 등이 가능하다.

사실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등 좋은 가치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현장의 ‘삶의 철학’, 즉 현장의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SNS는 자연철학, 유기체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사건의 논리적 예측적 분석적 도구를 사용한다(Everette E. Dennis and Melvin L. 2010). 그 내용은 “①조사로부터 도출되는 관계정의 전제(interrelated propositions)를 알아낸다. 이는 사건이 실제 작동 하는 것에 대한 묘사, 관계성으로 작동의 원리를 알아낸다. ② 사전 상황이 결과를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한 설명(explanations), 이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③사건을 풀이 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하는 논리적 예측(logical predictions)으로 더욱 세심한 관찰 하에서 얻어진다, ④ 조사에 의한 정확성(accurate)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확성은 교정하고, 다시 검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로 규정했다.

## 6.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과학적 검토

시장이 작다보니 국내에서는 특정 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 수가 제한적이라 연구 자체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업체 문제

인지, 조사 방식 문제인지 식별이 어렵다(한규섭, 2019.10.17).

미국에는 수많은 조사업체가 존재하고 특정 조사 방식을 고수하는 업체도 많다. 미국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파이프서티에이트(Tive Thirty Eight)에서는 선거 조사 결과를 취합해 조사업체별 평가지수를 공개 한다. 일반 여론 조사와 달리 선거 조사를 실제 선거 결과와 비교가 가능해 조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 7.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윤리강화.

공공 저널리즘(public or civic journalism)은 ‘언론의 책임’이란 시민 문제에 관한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뒤르켐은 현대 국가에서 사업의 성격의 명료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를 기대했고, 민주 정부의 체계의 구체화, 전문화로 제도의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뒤르켐은 인간의 유기체를 체계의 분업으로 풀어갔다. 유기체와 체계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 유기체와 체계는 항상 목표를 추구하고, 전체와 부분이 서로 소통하고, 전체는 하나의 단일체로 작동한다.

관찰, 실험, 비교의 방법론을 쓴다. 인과관계를 뽑아낸다. ‘일차 자료(firsthand coverage)’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리 움직인다. 선전, 선동, 세뇌로 홍위병, 나팔수 경향을 계속한다. 주로 바람을 잡는 쪽은 깰럽과 리얼미터이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깰럽은 신뢰성을 많이 잃었고, 문제인 청와대는 리얼미터에 주로 의존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교통방송, YTN등에서 일주일에 1, 2번씩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교통방송은 60%이상을 교통, 기상보도를 하게 되어 있으나, 노골적으로 김어준 씨 등을 붙여놓고, 정치방송을 계속해왔다.

8. 인터넷·포털 공공성 특별위원회 구성

-여야 합의 또는 동수 추천의 학계·법조·언론·미디어계 전문인사로 구성하고 관계부처는 지원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소화 방안 및 해외 사례 연구 채택, 인터넷 유통에 의한 피해신속구제 방안 연구 및 제도 마련 등 전반적 공공성·공익성 강화 방안 수립후 관련 법률 제개정안 입안, 국회는 특별사유 없으면 의결.

9. 포털 알고리즘 공공검증 위원회(공공성 위배 여부 검증 및 시정·조정 조치)

10. 포털의 언론 규정 입법(언론관계법 개정)에 의한 공적 책임 부여 또는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화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 정치중립 기구화(여야 동수 추천의 학계·법조·언론·미디어계 전문인사에 의한 심의위원 선임)

12.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속심의 기능 및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강화

13. 정치중립적 팩트체크기관의 설립 및 지원

14. 공영방송, 공영언론, 언론·미디어·교육 관련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완전 정치 중립화

15. 대형 포털(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관리.

16.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자율정책심의기구(KISO 등)의 공적 성격 강화

참고문헌

구본우(2019.09.25), 「KBS 노동조합(1노조)에서 실시한 투표 참여자 87% ‘양승동 사장 불신임」 『조선일보』 .

기현석,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아주법학》, 제 12권 제3호, 253쪽.

김광일(2019.09.17), 「문 대통령 자신감, 근거가 뭘니까?」, 『조선일보』 .

김대원(2017),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콘텐츠 생산과 유통; 그 영향과 연구 과제”, 『데이터 시대의 언론학 연구』, 한국언론학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59.

김동하(2019.10.14), 「유시민의 오만..하다하다 이젠 ‘조국수사 끝낼 시점」, 『조선일보』 .

김성호(2011.11. 14), 「시론: 민주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민주 없다.」, 『조선일보』 .

김성후(2018. 10. 31.). 「‘한국 언론, 사실보단 정치인·재벌과 더 가까워」 『기자협회보』 .

김재형(2019.10.28), 「일상을 바꾼 디지털 혁명」, 『동아일보』 .

권호(2019.10.14), 「文 ‘검찰은 조직보다 국민 봐야..언론도 자기 개혁해 달라」, 『중앙일보』 .

김도연(2018.12.14).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이례적 방송법 유죄」, 『미디어오늘』 .

김상겸(2019.4.19, “민주주의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미디어 연대 토론회, 10.

남정욱(2019), 『북에서 본 남조선 역사』, 백년동안, 459.

박상현(2019.05.22).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미디어오늘』.

변옥환(2019.10.18), 「정부광고 ‘통행세’ 10% 걷는 언론진흥재단, 지방은 홀대」, 『CNB News』.

변희원(2016.11.17.), 「포스트 트루스」, 『조선일보』.

사설(2019.07.27.), 「일본 신문이 강한 이유」, 『미디어오늘』.

성종탁(2016), “최근 미국의 사내 소셜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제 동향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9(4)..

성한표,(2013. 06.07.). < 「‘뉴스타파’가 주는 두 가지 울림」, 『한겨레신문』 .

손영준(2019.10.02), 「포털 저널리즘, 민주주의 걸림돌이 됐다」, 『중앙일보』 .

신규진(2019.10.22). 「지상과 TV ‘넷플릭스, 아군인가 적군인가」 『동아일보』 ,

오일석·지성우·정운갑(2018),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 29(1), 160.

신동훈(2018.9.19.), 「법원, KBS ‘인적 청산’에 제동 걸었다.」, 『조선일보』 .

안준용(2019. 09.21), 「말 바꾼 한상혁(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유통방지 관련기구 설치 검토」, 『조선일보』 .

우리의 주장(2018.04.11.). 「양승동 사장의 ‘새로운 KBS」, 『기자협회보』 .

유의선(2018), “가짜뉴스의 범적 규제”, 『언론과 법』, 17(2), 39-68.

유혁(2016), “4차 산업혁명-우리의 ‘파티’는 계속될 것인가”, 『언론 AMP-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윤성옥(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17(1), 51-84.

윤성옥(2019),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과

법』, 18(1), 131-5.

윤주현(2019.11.02), 「오보로 만들겠다는 협박」, 『조선일보』 .

이완수(2018.11.),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문재인 정부-가짜뉴스 근절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 (『미디어연대 1년 정책토론회·활동모음』, 미디어연대. 195.

이형석·김정기(2019), “언론과 인터넷상 사적 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미국연방대법원과 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법학』, 35(1), 172.

원 선 우 · 이 슬 비 ( 2 0 1 9 . 1 0 . 1 4 ) , 「野 ‘유시한 마디에 양승동 사장 나선 건 KBS 편성 규약 위반」 『조선일보』 .

윤승훈(2018.12.17)., 「‘뉴스 모바일로 본다’ 80%..신문 열독률 17% 불과」, 『전파신문』 .

이명진(2019.11.02). 「日 법무상 사퇴」, 『조선일보』 .

이진우(2018.10. 31), 「‘간부가 평사원 2배’ 조선 보도에 대해 MBC ‘명백한 허위」 『기자협회보』 .

이인철(2018), “가짜뉴스 대응 입법안과 정부의 대책 안에 비판”, 『미디어연대 1년』 .

장호순(2009), “신문시장 구조 개편을 통한 신문산업 활성화 방안 ‘지역 거점 전국지’ 모델과 전국지/지역지의 계열화를 통한 신문시장 구조개선 방안”, 『2009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신문의 미래 전략’ 세미나』, 69.

정세훈, 「가짜 뉴스의 대응 방안 및 쟁점」, 『관훈저널』 2018봄, 146, 79.

조맹기(2017), 『과학기술과 언론보도』. 패러다임북스, 214.

정상혁(2019, 9.4.), 「인스타그램,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 『조선일보』 .

정우상(2019.09.17) , 「文 대통령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소득주도성장 더 적극 추진」, 『조선일보』 .

최종찬(2019.10.29), 「실폐 판정난 정부주도 경제정책 더는 안 된다」, 『동아일보』 .

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서(2019.09.24), 「조국 자택 압수수색, ‘먼지 털



기식 무리한 수사 'KBS9 뉴스' .  
 한규섭(2019.10.17),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과학적 검토 있어  
 야」, 『동아일보』 .  
 황용석·권오성(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  
 구”, 『언론과 법』, 16(1), 53-101.  
 Berlin, I(1964/2006), "Liberty-Incorporating", Fours Essays on  
 Liberty, 박동천(역),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75.  
 Dutton, William H.(2013), The Rise of Internet Studies as a  
 New Filed of Global Significance, The Oxford Handbook of I  
 nternet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5.  
 Frank, R. Caveat(2015), “fake news as folklor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28, 315-332.  
 Philip, Cox Broadcasting Co. v Cohn, 420 U.S. 1975, para 46.  
 Everette E. Dennis and Melvin L. Defleur(2010), Understanding  
 Media in the Digital Age, New York: Ally & Bacon, 5.  
 Gunter, Barrie(2003), News and the Net,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6.  
 McNair, Brian(2009),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UK:Routledge, 32.  
 Parsons, Talcott.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1951, 5.  
 Pettit, P.(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1.  
 Tandoc Jr. E.C. Lim, Z. W., & Ling, R.(2018), Defining 'fake  
 News" A Typology of Scholarly Definitions, Digital  
 Journalism 6(2), 137-153.

(조선일보) 2019.11.11.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5847>

**"유튜브版 블랙리스트... 구글 제소할 것"**

(한국경제신문) 2019.11.08.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38404>

**유튜버 단체 "노란딱지 검열 중단하라"**

(노컷뉴스) 2019.10.25.보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574>

**'실검'개선 놓고 전문가 의견 팽팽..."의사표현"vs"여론 조작"**